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경영 의원 외 9명
- 의안번호 : 제1412호
- 발의일자 : 2020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시설은 기존 공원시설과는 차이가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〔별표 2〕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으므로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문화비축기지 내 공원시설 이용료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의 대여료를 강의실 대여료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하며,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하는 공연장과 옥상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함(안〔별표 2〕).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

## 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각 시설의 요금과 징수 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는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, 서울시 공원 중에는 운동시설, 교양시설, 편익시설 등 공원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(첨부 1 참고).
- 동 조례에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공원시설의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(제15조), 사용료(제16조), 점용료(제17조)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[별표]에 정하고 있음.

[별표 1] 공원입장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3] 공원 및 녹지 점용료(제17조 관련)

#### 2)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

- 2017년 개장한 문화비축기지는 기존 석유비축기지로 사용되던 탱크들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, 강의실, 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만든 복합문화공원임.

-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중에는 문화마당,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 등 기존 공원시설과 형태를 달리하는 시설도 있으며, 각 공간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통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 문화비축기지는 각 공간별로 조명, 전기, 음향시설 등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, 동 조례에는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규정이 없어서 공간 이외에 시설 및 장비 대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-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(2019. 1. 15 이후), 상위법령에서 공원시설 이용요금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과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.

### 3)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통기준이 필요한 시설

-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비축기지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의 공원시설 이용료 규정을 위한 개정안이나, 서울시 공원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.
- “강의실”은 공원별로 강의실, 회의실, 사무실 등 다양한 용어로 공원시설을 정하고 있으며, 그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강의실과 유사한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.
- “공연장”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에 교양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「공연법」에서 정하는 시설임. 서울시 공원에는 작은규모 소공연장부터 627석 대규모(국립극장 하늘극장) 공연장이 있으며, 운영주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.

- 남산 도시자연공원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극장이 있으며, 시 직영공원 중에는 문화비축기지에 T2공연장, 북서울꿈의숲에 꿈의숲아트센터가 있고,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관악아트홀, 명일근린공원에 강동아트센터 등이 있음.
-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은 「국유재산법」에 근거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시직영관리공원의 공연장은 동 조례를 통해 운영하여야 하므로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. 특히 공연장 중에는 현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공연장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 현재 운영계획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.

구분	공원명 (관리방식)	시설명	이용요금 (100㎡, 1시간)	관련 근거
시직영 관리 공원	문화비축기지 (시직영)	T2공연장	20,000원	·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(별표2 공원시설 이용료-강의실 대여료 적용)
	북서울꿈의숲 (관리위탁)	꿈의숲아트센터	55,000원	·수탁자 내부 방침 (객석 단가를 기준으로 대관료 산정)
자치구위임 공원	관악산 도시자연공원 (관리위탁)	관악아트홀	5,400 ~10,100원	·별도 조례 제정 운영중
	명일근린공원 (관리위탁)	강동아트센터 (대·소극장)	27,000~ 107,400원	·별도 조례 제정 운영중 ·클래식, 연극·무용, 뮤지컬 등 장르별로 산정
국가 시설	남산 도시자연공원	국립극장	86,000~ 380,000원	·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(문화체육관광부령) 운영중 ·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적용

- “옥상공간”(면적 157m<sup>2</sup>)은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공간으로 전시, 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. 그러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정의할 경우 일반 건물의 옥상도 이용료 부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임.

#### 4)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

- 동 조례 [별표2]에서 개정되는 시설은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임.

##### ① 강의실

- 서울시 공원의 강의실은 명칭이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, “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을 포함”하는 내용과 “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”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
##### ② 옥상공간

- 문화비축기지의 옥상공간은 전시, 행사,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. 그러나 일반적인 옥상공간은 건물 옥상의 별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,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.
- 따라서 별도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 보다는 공연장에 옥상공간을 포함하여 요금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.

### ③ 공연장

- 동 개정안에 “공연장” 기준을 신설하였으나,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이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  -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, 장비이용료를 별도로 하며, 야간은 30%를 가산하는 내용은 타 시설 요금과 비교해본 결과 적절한 조치임.
  
-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(복합문화공간)은 별도의 운영관련 규정(타법적용, 운영조례)을 가지고 있음. 따라서 동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임.
  - 다만 향후 신설되는 공연장 및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동 조례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용료 부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.
  
- 동 조례에는 공원시설에 대한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,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각 공원의 시설별로 요금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, 서울시 자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.

## 첨부 1

###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공원시설"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로 또는 광장

나. 화단, 분수, 조각 등 조경시설

다. 휴게소, 긴 의자 등 휴양시설

라.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

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궁도장 등 운동시설

바. 식물원, 동물원, 수족관, 박물관,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

사. 주차장, 매점,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

아. 관리사무소, 출입문, 울타리,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

자. 실습장, 체험장, 학습장,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(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한 시설

차. 내진성 저수조, 발전시설, 소화 및 급수시설,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

카.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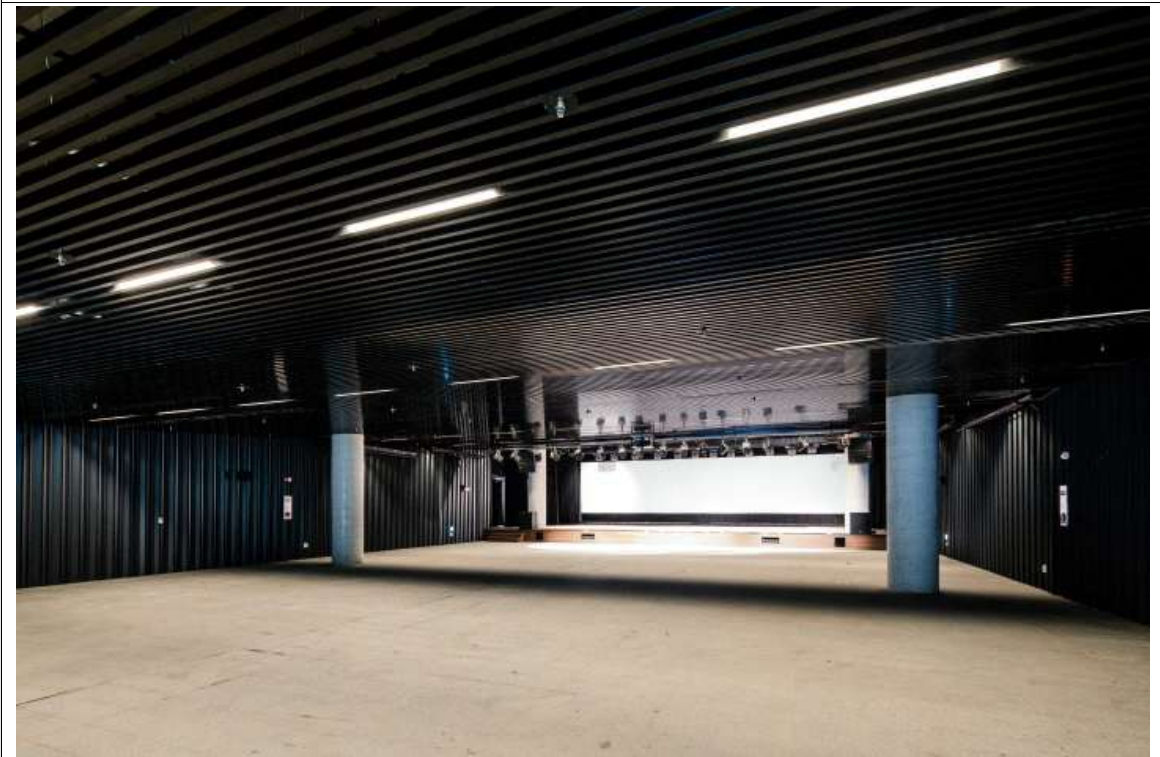
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
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 첨부 2



T6 옥상공간



T2 실내 공연장